

**2025년 농림축산검역본부
종합감사 결과 공개문**

2026. 1.



**농림축산식품부
감사관실**

□ 감사근거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 및 제21조(실지감사)

□ 감사목적

-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관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, 주요 업무를 점검하여 사업추진의 방법 개선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

□ 감사기간 및 인원

- 기간: 2025. 9. 8. ~ 9. 26. (15일간)
- 인원: 감사담당관 외 5명

□ 감사대상 : 농림축산검역본부(경북 김천 소재) 및 2개 지역본부*

* 서울지역본부(서울), 영남지역본부(부산)

□ 감사범위 및 내용

- (감사범위) 최근 3년간('22년~'25년)의 기관운영,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 - (기관운영) 계약, 채용, 복무, 인사, 예산 등 기관운영의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
 - (사업분야) 동물 질병 및 식물 검역, 연구 실시 현황 등을 점검하여 검역·방역·연구 사업의 적정성 검토

II

감사 결과

1

업무추진비 집행 미흡 [통보]

□ 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’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비(240-1목)와 관서업무추진비(240-02목)로 구분하여 적용범위 및 세부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,

○ 검역본부는 사업추진비 중 일부를 관서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맞는 항목*으로 집행함

* 직원격려, 동아리 지원, 사회복지시설 방문지원 등

조치 방향

○ 업무추진비가 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’에 명시된 집행지침상 목적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실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(통보)

2

일상감사 업무 추진 미흡 [통보]

□ 「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」에 따르면 건당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·구매, 용역, 그 밖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,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나,

- 검역본부는 건당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처리하였고,
- 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실시결과 유의미한 검토의견이 포함된 일상감사 결과를 송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, 14일을 초과하여 통보하였음

조치 방향

-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처리하거나, 일상감사 결과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미통보 또는 지연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실시 등 관리방안 마련 요구(통보)

3

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[시정요구]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및 「공무원 인재개발원 업무지침」에 따라 출장자의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고 교육파견자의 일비는 등록일, 수료일, 기타일을 구분하여 지급하며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,
- 검역본부는 출장자 및 교육파견자에 대한 일비 및 숙박비를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초과 지급함

조치 방향

- 출장자 및 교육파견자의 여비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초과 지급한 여비를 회수 조치하시고,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(시정)

- ‘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<표준안>’(국민권익위원회, 2023.3.)에 따라 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·관리하여야 하나,
- 자체 규정에 심의기구의 간사 선임과 회의록 작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, 실제 심의기구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않고 있음
-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원서 접수 마감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「민법」에 따라 공고일을 계산하여야 하나, 일부 근로자 채용 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

조치 방향

- ‘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<표준안>’에 따라 「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에 인사위원회의 간사 선임과 회의 소집 후 회의록 작성·보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 (개선)
-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공고기간을 준수하도록 교육 실시 요구 (통보)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15백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나,

- 15백만 원 이상의 공사임에도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와 공사를 체결함

조치 방향

- 전문공사 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당자 교육 실시 등 관리방안 마련 요구 (통보)

6

겸직 허가제도 운영 미흡 [개선요구 · 통보]

-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」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고, 명백히 계속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 허가의 대상인지 심사를 받아야 하나,
- 검역본부 일부 직원은 담당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고, 겸직허가 심사 없이 동일 기관에 주기적으로 외부강의를 진행함
- 공무원이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허가받은 업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를 취소해야 하나, 소속 공무원의 겸직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

조치 방향

-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」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 중 직무가 변경된 공무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요구 (개선)

- 검직기간 중 검직업무 종료 시 검직 허가를 취소하거나, 동일 기관에 주기적으로 외부강의 진행 시 검직 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검직 허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도록 요구 (통보)

7

축산물검역창고 보관관리인 지정 규정 불합리 [개선요구]

-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는 축산물보관관리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과 보관관리인의 자격,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4조에 따르면 규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,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,
- 검역본부는 보관관리인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규제에 관한 사항을 「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규정」으로 정하면서 관련 법률에 규정한 사항보다 강화하거나 추가하여 제도를 운영함

조치 방향

- 「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」에서 규정한 내용과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서 정한 규정 등을 비교·검토하여 위임범위 및 한계에 부합하게 규정 정비 요구 (개선)

- 「해외식물검역정보 수집요원 운영지침」에 따르면 해외식물검역정보 수집요원은 정보수집 실적 등에 따라 경고 및 계약해지 조치 등의 관리를 해야 하며, 근로자 채용이 아닌 국가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으로 요원을 모집하여야 하나,
- 검역본부는 일부 정보수집요원의 월 정보수집 실적율이 50% 이하이거나 2개월 연속 80% 이하임에도 관련 지침 및 계약서에 따라 경고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,
- 정보수집요원 모집을 하면서 근로자 채용의 방식으로 공고 및 심사하면서 활동계약을 작성하는 등 관련 법규에 맞지 않게 채용(모집) 업무를 추진함

조치 방향

- 정보수집요원 운영 시 「해외식물검역정보 수집요원 운영지침」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시고, 정보수집요원 모집 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 등 채용의 적절한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교육 실시 및 관리방안 마련 요구 (통보)

-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에 따른 이용료 산정 등을 위해 공동활용규정^{*}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으나,

*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

-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시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고, 이용료도 공동활용규정과 달리 원 단위 절사함

조치 방향

-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이용료 징수 등이 공동활용규정에 맞게 시행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요구 (개선)

10 연구실 안전관리 미흡 [권고]

-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여야 하며,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,
- 위원회 위원을 연구주체의 장인 검역본부장이 지명하지 않았으며, 본부 연구활동종사자로만 위원을 구성하여 지역본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외되었음

조치 방향

- 위원회 구성시 연구주체의 장인 검역본부장이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지역본부 연구활동조사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(권고)

-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 및 「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」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‘연구 시설·장비 종합 정보시스템’에 등록하고 등록 자료를 연구관리부서장과 행정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,
- 검역본부는 2022년 이후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장비 중 상당수에 대하여 지연 등록 또는 미등록 하였고, 등록자료를 연구관리 부서장과 행정지원부서장에게 미제출함

조치 방향

-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 따라 연구시설장비가 등록·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(통보)

- 「연구노트 지침」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·관리하여야 하며, 검역본부는 연구노트의 작성 지원 및 관리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,
- 2022년 이후 연구노트를 검토한 결과 기록자와 확인자를 미작성 하였을 뿐 아니라 실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내용 등이 기재 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됨

조치 방향

- 「연구노트 지침」에 따라 소속 연구자의 연구노트 작성 지원 및 관리사항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 작성·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○○○○과에 ‘부서주의’ 조치 하도록 요구 (부서주의)
-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하고, 관리부서에서는 연구노트의 관리 및 보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노트 도입, 연구노트 불성실 작성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(통보)

13

외부재원 연구사업비 수입처리 미흡 [통보]

- 「국고금관리법」 및 「국가재정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재원 사업비를 수입관리하고, 수입대체경비를 별도 회계 처리 하여야 하나,
- 검역본부는 외부재원 연구사업비를 자체규정인 「외부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」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있음

조치 방향

- 외부재원 연구사업비가 상위규정인 「국고금관리법」 등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구 (통보)

- 국내 일부 농가에서 검역병해충인 토마토빨나방 발견으로 토마토 주요 수출국인 일본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음
- 검역본부는 선제적인 검역협상과 토마토빨나방 수출검역요건 완화 제안을 통해 국산 토마토의 안정적 일본 수출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함

조치 방향

-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대 일본 토마토 검역 협상을 통해 수출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한 담당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천하시기 바람 [통보(모범사례)]